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15-259 (2015.6.24)
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-3538 (2015.6.25)

2. 메르스 상황과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타 요양기관(협력 의료기관 등)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이 기존 대리처방, 전화처방 특례(상기 관련문서)에 폐쇄 요양기관 외래환자의 약제 처방 시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추가 조치함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.

가. 보건복지부·메르스 관련 의료기관·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'등(보건의료정책과 제4105호 등)에 따라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, 전화처방,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약제를 처방 시 인정한다.

나. 다만,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,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.

이 경우,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 명칭(기호), 환자의 상태, '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'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,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 상병을 기재한다.

다. 동 사항은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266 ( 2015.06.25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ldm@kha.or.kr